

인천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3가단2419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과사람들

담당변호사 김종열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4. 8. 27.

판 결 선 고 2024. 10. 22.

주 문

-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양주시 D 임야 1,257㎡에 관하여 2020. 10.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42,163,4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42,163,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레미콘, 펌프카의 임대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9. 9.경부터 2020.

2.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레미콘을 납품하여, 위 회사에 대하여 2020. 3. 25.

기준 합계 42,163,470원의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채권을 갖고 있다.

나. 원고는 2020. 5. 12. 의정부지방법원 2020카단624호로 C 소유이던 양주시 D 임야

1,2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자 원고, 청구금액 42,163,470인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위 가압류 결정에 기한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C 측의 요청을 받고 2020. 12. 3. 나.항 기재 가압류 사건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0. 12. 9. 나.항 기재 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C은 2020. 10.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12. 3.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토지만이

있었다.

바. 한편, 대한민국은 2020. 9.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기입등기를

마쳤는데, 위 압류기입등기는 C이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2020. 12.

3. 같은 날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디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2020. 12.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가압류 사건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면서 이미 C이 피고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2020. 12. 31. 및 2021. 3. 31. 피고에게 피고의 사업장 주소가 위 토지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일부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토지에는 건축주 명의로 피고로 기재된 건축물 표시도 있었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3. 5. 1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제척기간이라 할 것인데,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둘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C과 피고 사이의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내용, C의 사해의사 및 채무초과 여부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C의 무자력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한 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4472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매매계약으로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는바, 이와 같은 C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는 C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가압류 등기 등을 모두 말소해 주기로 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이고, 2020. 12. 4. 원고에게 위 가압류 등기 말소에 대한 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1,500만 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거나,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의 취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 기타 공과금 채권에 기한 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위 채권이 변제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5906 판결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20. 12.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제1의 바.항 기재 조세 채권에 기한 압류기입등기가 변제 등에 의하여 말소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토지의 가액에서 위 조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가가 9,000만 원으로 평가되는 사실, 위 시가에서 제1의 바.항 기재 조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가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액 42,163,470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위 토지의 시가가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특별히 상승 또는 저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시가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위 토지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위 매매계약은 42,163,4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2,163,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영